

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 련 1094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0년 6월 18일
제 안 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고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등에 관한 부분을 수정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의 수립·시행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함 (안 제3조 수정)
- 나. 마약류 중독자 및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,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등을 치료보호 및 사업 등으로 수정하고, 전문의료기관 및 단체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대한 조항으로 수정함.(안 제5조 수정)
- 다. 보조금 조항 및 홍보 등의 조항 삭제함 (안 제5조 제9조 삭제)

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마약류 및
유해약물로부터 시민의 정신적,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
류 등의 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지
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연구·조사
및 오남용 등 예방 교육 등에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
한다.

제3조의 2를 제4조로 하고, ① 중 "해마다 수립·시행한다."를 "매년 수립
하여 시행할 수 있다."로 하고, ② 중 "포함되어야 한다."를 "포함할
수 있다."로 한다. 같은 조 제2항의 제1호에서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
이 한다.

1. 마약류 중독자 및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
2.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3.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예방의 사업추진을 위한
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4.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

구축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4조는 삭제하고 제5조(치료보호 및 사업 등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치료보호 및 사업 등)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마약류 중독자 및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
2.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
3.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
4.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·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·평가 사업
5.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 및 단체에게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6조의 "마약류 또는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"를 "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"로 한다.

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<신구조문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의2제1항, 「<u>청소년보호법</u>」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<u>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사항</u>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① 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의2제1항, 「<u>청소년 보호법</u>」 제5조제1항 ----- ----- ----- <u>위하여</u> ----- ----- <u>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① (현행과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개정안과 같음.)</p> <p>제1조(목적)(개정안과 같음.)</p> <p>제2조(정의)(개정안과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② <u>이외의 용어는 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청소년보호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</p> 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<u>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시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,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지 촉진을 위하여 연구·조사 등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시장은 유해약물로부터 시민의 정신적,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, 예방 및 안</u></p>	<p>같음)</p> <p>② <u>이외의 용어는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청소년보호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</p> 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연구·조사 및 오남용 예방 교육 등</u> ----- -----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	<p>같음.)</p> <p>제3조(시장의 책무)① <u>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시민의 정신적,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의 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지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연구·조사 및 오남용 등 예방 교육 등에 필요한 공공보건의료</u>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<u>연구사업</u>의 지원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공공, 민간단체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-- <u>연구사업 및 오남용 예방 교육·홍보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<u>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</u></p>
<p>③ <u>시장</u>은 치료보호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.</p>	<p>③ <u>시장</u>은 <u>오남용 예방교육</u> 및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③ <삭제></p>
<p>④ <u>시장</u>은 치료보호와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</p>	<p>④ <u>시장</u>은 <u>오남용 예방교육</u> 및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④ <삭제></p>
<p><u><신설></u></p>	<p><u>제3조의2(예방계획의 수립·시행)</u>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(이하 “예방계획”이</p>	<p><u>제4조(예방계획의 수립·시행)</u>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(이하 “예방계획”이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	<p>라 한다)을 해마다<u>수립·시행한다.</u></p> <p>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<u>1.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</u></p> <p><u>2.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3. 제4조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등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4.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5.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6.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7. 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</p>	<p>라 한다)를 <u>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<u>1. 마약류 중독자 및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 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2.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3.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예방의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4.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</u></p> <p><u>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</u>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4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시장은 마약류 또는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1. 마약류중독자 치료 보호 사업</p> <p>2.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</p> <p>3.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사업</p> <p><신설></p>	<p>제4조(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등)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마약류·환각물질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사회복귀사업</p> <p>2. 미취학아동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</p> <p>3. ----- ----- -----교육·홍보 -----</p> <p>4. 초·중·고등학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</p>	<p><u>항</u></p> <p>제5조(치료보호 및 사업 등)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마약류 중독자 및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 보호 사업</p> <p>2.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</p> <p>3.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</p> <p>4.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4. (생략)</p> <p>5. <u>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</u></p> <p><신설></p> <p><신설></p> <p>제5조(보조금) ① 시장은 <u>제4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의 사업</u></p>	<p><u>원사업</u></p> <p>7. (현행 제4호와 같음)</p> <p>5. 예방교육의 전문인력 육성·지원 사업</p> <p>6.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·평가 사업</p> <p>8. <u>그 밖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</u></p> <p><신설></p> <p>제5조(보조금) ① ---- 제4조제1호에 따른 치료보호 사업 추진-</p>	<p><u>5 <삭제></u></p> <p>4. <u>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·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·평가 사업</u></p> <p>5. <u>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</u></p> <p>8. <삭제></p> <p>② <u>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 및 단체에게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제5조(보조금) ① <삭제>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<u>추진</u>을 위하여 전문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.</p>	
<p>② 시장은 <u>제4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</u>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② ----- 제4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② <삭제></p>
<p>③ <u>제1항</u>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를 따른다.</p>	<p>③ 제1항 및 제2항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③ <삭제></p>
<p>제6조(비밀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<u>의한</u> 마약류 또는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 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	<p>제6조(비밀준수의 의무) ----- 따른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p><u>제6조(비밀준수의 의무)</u> 이 조례에 따른 <u>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7조(지도·감독) 시장은 제5조에 의한 재정지원을 하는 전문기관을 지도·감독하며,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7조(지도·감독) ----- 따라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8조(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) ① 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·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</p>	<p>제7조(지도·감독) (개정안과 같음.)</p> <p>제8조(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) ① (개정안과 같음.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.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 data-bbox="245 338 416 383"><신설></p>	<p data-bbox="671 271 946 315">표창할 수 있다.</p> <p data-bbox="639 338 1034 853">제9조(홍보)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예방과 폐해에 대하여 일반 시민과 오남용 취약계층에게 적극적으로 <u>홍보를 하여야 한다.</u></p>	<p data-bbox="1062 338 1409 383">제9조(홍보) <삭제></p>

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2제1항, 「청소년보호법」 제5조제1항”을 “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2제1항,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5조제1항”으로, “위한 서울특별시”를 “위하여”로, “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”을 “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”로 한다.

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이외의 용어는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청소년 보호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를 다음과 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시민의 정신적,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의 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연구·조사 및 오남용 등 예방 교육 등에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 제4조의 제목 “(행정적·재정적 지원)”을 “(예방계획의 수립·시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(이하 “예방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.

1. 마약류 중독자 및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
2.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3.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예방의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4.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치료보호 및 사업 등)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마약류 중독자 및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
2.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
3.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

4.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·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·평가 사업

5.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 및 단체에게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6조 중 “의한 마약류 또는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”을 “다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”로 하고,

제7조 중 “의한”을 “따라”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(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) ① 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·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<신구조문대비표>

현 행	수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<u>유해약물</u> <u>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마약류관</u> <u>리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의2제1항, 「<u>청소년보호법</u>」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특 별시 마약류 및 <u>유해약물 오남용</u> <u>방지 및 안전에 관한 사항</u>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① (생 략) ② 이외의 용어는 「<u>마약류관리에</u> <u>관한 법률</u>」, 「<u>청소년보호법</u>」 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<u>시민</u> <u>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</u> <u>방하고,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<u>유해약물의</u> <u>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</u></p> 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마약류 관</u> <u>리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의2제1항, 「<u>청소년 보호법</u>」 제5조제1항 - ----- ----- ----- <u>위하여</u> ----- ----- <u>유해약물의 오남용</u> <u>방지</u>와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이외의 용어는 「<u>마약류 관리에</u> <u>관한 법률</u>」, 「<u>청소년 보호법</u>」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----- ----- <u>마약류</u> <u>및 유해약물로부터 시민의 정신</u> <u>적,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</u></p>

료보호와 사회복지 촉진을 위하여 연구·조사 등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유해약물로부터 시민의 정신적,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해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,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공공, 민간단체 간 협력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치료보호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수행기관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치료보호와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제4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시장은 마약류 또는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사업

여 마약류 등의 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지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-----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연구·조사 및 오남용 등 예방 교육 등에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③ <삭제>

④ <삭제>

제4조(예방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(이하 “예방계획”이라 한다)를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

2.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

3.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등에 관한 사업

4. 유해약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

5.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

<신 설>

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마약류 중독자 및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에 관한 사항

2.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

3.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예방의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
4.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치료보호 및 사업 등) ①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마약류 중독자 및 환각물질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

2.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

3.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

4.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

지를 위한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·지원 및 프로그램의 개발·평가 사업

5.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 및 단체에게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5조(보조금) ① 시장은 제4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문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4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

제6조(비밀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의한 마약류 또는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 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

제5조(보조금) ① <삭제>

② <삭제>

③ <삭제>

제6조(비밀준수의 의무) -----
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-----

서는 아니 된다.

제7조(지도·감독) 시장은 제5조에 의한 재정지원을 하는 전문기관을 지도·감독하며,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.

<신 설>

-----.

제7조(지도·감독) -----
따라 -----

-----.

제8조(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) ①
시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·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「서울특별시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